감 사 원

주 의 요 구

제 목 **시험연구비 예산 집행 부적정**

소 관 기 관 국립산림과학원

조 치 기 관 국립산림과학원

내 용

1. 업무 개요

국립산림과학원은 매년 「국가재정법」 및 「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」(기획재정부) 등에 따라 시험연구비 세출예산을 집행하고 있다.

2.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

「국가재정법」 제45조의 규정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, 같은 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르면 예산의 목적범위 안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.

그리고 2016년도 및 2017년도 「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」(기획재정부)에 따르면 시험연구비(210-13목)는 국가시험연구기관에서 시험연구에 직접 관련된 경비에만 집행하도록 되어 있고,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보수는 시험연구비가 아닌 인건비[2017년은 상용임금(110-03목), 2016년은 기타직보수(110-02목)] 예산에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다.

3.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

그런데도 국립산림과학원은 [별표] “시험연구비로 지급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보수 명세”와 같이 2016년도와 2017년도에 인건비에 편성된 예산이 부족하자 기획재정부와의 전용절차도 거치지 않고 도서관 사서보조 등 시험연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보수 계 206,030,390원을 시험연구비 예산으로 집행하였다.

관계기관 의견 국립산림과학원은 감사원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시험연구와 관련이 없는 기관 운영을 위한 인건비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통하여 인건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, 앞으로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시험연구비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.

조치할 사항 **국립산림과학원장**은 앞으로 예산 집행지침과 다르게 시험연구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보수를 시험연구비 예산으로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.**(주의)**

[별표]

시험연구비로 지급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보수 명세

(단위: 원)

연도	집행 예산과목[주]	근무부서	담당업무	지출금액	정당 예산과목
2016년	1251-300-210-13	본원 연구기획과	도서관 사서보조	16,013,600	1251-300-110-02
			홍보작가	25,706,000	
			홍보디자인	19,106,000	
			숲해설가(4명)	46,200,000	
		산림약용자원연구소 연구행정실	전기 및 시설 관리	8,945,920	
	소계			115,971,520	
2017년	1251-300-210-13	본원 연구기획과	도서관 사서보조	17,581,230	1251-300-110-03
			홍보작가	23,795,470	
			홍보디자인	20,516,770	
		난대·아열대산림연구소 연구지원실	사무보조(2명)	18,685,400	
		산림약용자원연구소 연구행정실	전기 및 시설 관리	9,480,000	
	소계			90,058,870	
총계 (2016 ~ 2017년)				**206,030,390**	

주: 1251[산림과학기술개발(일반)] - 300[산림과학연구(R&D)]

자료: 국립산림과학원